공정노동기준법 (FLSA)상 근로자 권리

연방 노동부 임금시간과

역방최저임금

\$5.85^{N간당}

55시간당

\$7.25^{Altr}

2009년 7월24일부터

2007년 7월24일부터

2008년 7월24일부터

오버타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업무시간에 대해 시간당 임금의 1.5배

미성년자 노동

농장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업은 16세 이상 그리고 노동부가 그리고 노동부 장관이 위험하다고 선포한 직종에서는 18 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14, 15세 청소년은 제조, 탄광직이 아닌 여러 비위험 직업에서 정규수업외 시간에서 다음 과 같은 조건하에 일할 수 있다:

-개학기간중 하루 3시간 또는 일주일에 18시간까지 -방학기간중 하루 8시간 또는 일주일에 40시간까지

또한 6월1일부터 노동절까지는 오전 7시전 또는 오후 7시 이후에 일할 수 없고 노동절 이 후에는 오후 9시 이후에 일할 수 없다. 농업부문에는 다른 규정이 적용되며 자세한 사항은 www.youthrules.dol.gov 에서 얻을 수 있다.

팁공제

고용주가 팁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팁을 받는 종업원에게 현금임금으로 최소한 \$2.13 을 지불해야 한다. 만약 종업원의 팁과 최소한 \$2.13 의 현 금임금을 합쳤을때 연방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면 고용주는 그 차액을 지불해야 한다. 또 한 다른 조건들도 맞아야 한다.

법집행

연방노동부는 노동법 위반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행정적으로 또는 소송을 통해 밀린 임금을 되찾아줄 수 있다. 노동법 위반시 민사 또는 형 사상 처분이 가능하다.

미성년자 고용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위반건당 최고 \$11,000 , 최저임금이나 오버타임 규정을 고의적으로 또는 반복해 위반하는 업주에 대해서는 위반건당 최고 \$1,100 의 벌금이 책정될 수 있다. 공정노동기준법은 법집행 절차에 참여하거나 신고한 종업원에 대한 차별이나 해고를 금지한다.

추가정보

특정 직업과 사업장은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규정에서 면제된다.

- o 아메리칸 사모아와 북마리아나제도의 근로자에겐 특별규정이 적용된다.
- ο 일부 주에서는 보다 강한 근로자 보호법을 제공하므로 고용주는 연방과 주법을 둘 다 따라야 한다.
- o 고용주는 이 포스터를 종업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 o 20세 미만의 종업원에게는 고용후 처음 90일 동안은 시간당 \$4.25를 지불할 수 있다.
- o 일부 풀타임 학생, 학생실습생, 견습생, 장애를 가진 종업원은 연방 노동부에서 발행하 는 특별 허가증이 있을 경우 최저임금 아래로 지불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1-866-4-USWAGE

(1-866-487-9243) TTY: 1-877-889-5627



WWW.WAGEHOUR.DOL.GOV